

의안번호	제 430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월 일 (제 285 회)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9년 11월 11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으로 하고, “자활용사촌안”을 각각 “자활용사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동법률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률에 따른”으로,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를 “(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다.

제5조의1을 제5조의2로 하고, 제5조의2(종전의 제5조의1) 중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를 “부동산”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하고, “설치”를 “설치·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8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4. 「과학관육성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제9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기계장비·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추징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후단 중 “60세”를 “65세”로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를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용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무원 임대주택용”을 “임대주택용”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를 “임대사업자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용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무원 임대주택용”을 “임대주택용”으로 한다.

제14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중 “주택”을 각각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다.

제15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을 제외한다)”를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7조 제목 중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를 “지역특산품생산단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라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7조의2제1항 본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전동차(「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전동차”로, “부동산과 전동차에 대하여는”을 “부동산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중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를 “부동산”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를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27조 단서 중 “3년 이상”을 “사용일부터 2년 이상”으로 한다.

제28조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를 각각 “부동산”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중 “가정”을 “가족”으로 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가족관계 등록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로, “직계비속(입양아 포함)”을 “자녀(입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입양자 포함)”으로 하며, “직접 양육하는 자”를 “양

육하는 자” 로 한다.

제30조의4제2항 중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2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충청북도 도세 감면 신청서” 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4항과 같은 조 제5항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2조제4항과 같은 조 제5항은 201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취득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p> <p>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 대상자가 동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취득하는 자활용사촌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p> <p>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 대상자가 같은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p>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의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어

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의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국가유공자 등이 이전받은 경우와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국가유공자 등이 이전받은 경우와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 4. (생략)

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①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생략)

제5조의1(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①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역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주민에 대한 의료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생략)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 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현행과 같음)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 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p>3. 국토해양부의 운수연수원 설립 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p> <p>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p> <p>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p> <p>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p> <p>7.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p> <p>제9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p> <p>1. ~ 4.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p> <p>제11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p>	<p>미술관</p> <p>3.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p> <p>4. 「과학관육성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p> <p>제9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삭제></p> <p>제11조(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기계장비·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p>
---	---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으로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기계장비·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제11조의2(화물자동차의 택배차 전환에 대한 감면) 화물운송사업자가 「용달·택배간 전략적 제휴센터」(이하 “전략적 제휴센터”

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추징한다.

제11조의2 <삭제>

라 한다)를 통해 사업용화물자동차의 구조를 소량화물 운송을 의뢰받아 운송인의 책임으로 배달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전략적 제휴센터”를 통해 운송계약 후 당해 차량을 1년 이내 계약해지, 매매 또는 용도 변경시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2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② (생략)

③ 제2항에서 “1가구1주택” 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제12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서 “1가구1주택” 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는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 ⑤ (생략)

제12조의2(하수급업자에 대한 감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하수급업자”라 한다)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하수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는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 <삭제>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 (임대용 부동산 취득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 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임대사업자 (임대용 부동산 취득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무원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생략)

②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 의무기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건설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당해 공동주택(「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현행과 같음)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 의무기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건설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당해 공동주택(「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

<p>법」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무원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p> <p>2. (생략)</p> <p>③ (생략)</p> <p>제14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생략)</p> <p>1. (생략)</p> <p>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p> <p>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p> <p>제15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p>	<p>법」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생략)</p> <p>1. (생략)</p> <p>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u>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u></p> <p>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u>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u>(「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p> <p>제15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p>
--	--

<p>감면) (생략)</p> <p>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p> <p>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p> <p>제16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p> <p>① (생략)</p> <p>②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주택을 제외한다)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부터 2월 이내에登記하는 경</p>	<p>감면) (현행과 같음)</p> <p>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p> <p>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p> <p>제16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p>
--	--

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생략)
2. (생략)

제17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라 농어촌 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登記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터 2월 이내에登記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17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登記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 공장 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내에 지정된 제품의 생산 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

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
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
하는 경우

제17조의2(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미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登記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은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 ③ (생략)

제17조의2(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미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登記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은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 ③(현행과 같음)

제18조(농어촌주택사업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 2.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의 규정을

제18조(농어촌주택사업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② <삭제>

<p>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취약지대책사업에 따른 독립가옥집단화사업</u> 2. <u>수복지역 및 접적지역의 재건축 건설사업</u> 3. <u>분산농지집단화사업</u> 4. <u>농어촌불량주택 개량사업 및 수해상습지마을 대책사업</u> <p>③ <u>소도읍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년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제1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p> <p>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전동차(「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p>	<p>③ <삭제></p> <p>제1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p> <p>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전동차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p>
--	--

대상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전동차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제21조(광산지역에 대한 감면) 광산근로자 및 광산지역복지사업 추진 대책의 일환으로 자금 지원을 받아 건축하는 광산근로자용 사택, 목욕탕, 독서실, 회관 등 공동화장실(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

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 <삭제>

제2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

립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23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충북신용보증재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립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23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충북신용보증재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생략)

제2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 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농공단지관리기관이 또는 당해 농공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3년 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8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 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농공단지관리기관이 또는 당해 농공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8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
 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
 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
 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30조의2(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
 한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
 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승인일부터 15
 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
 다.

②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
 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
 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
 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
 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
 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30조의2(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하여는 개발계획승인일부터 15년
 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
 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단, 사업개시일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 취득일)부터 15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 (생략)

1. ~ 4. (생략)

제30조의4(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①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입양아 포함)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

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단, 사업개시일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 취득일)부터 15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제30조의4(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①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의한 가족으로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입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입양자 포함)셋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해당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생략)

〈신설〉

제32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도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충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2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도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청북도 도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제2장의 경우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제2장의 경우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및 제8조(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 및 일반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112조(세율)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화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 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용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5. 고급선박 : 비영업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 6. 삭제 <2000.12.29>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 (자활용사촌의 지정)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공상군경 1급 중상이자"라 한다)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공상군경 1급 중상이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행정구역(「지방자치법」에 따른 동 또는 리를 말한다)에 마을 단위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마을을 자활용사촌(自活勇士村)으로 지정하여 행정상·재정상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아파트형공장"이란 한 건축물에 여러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 (아파트형공장)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농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의 육성과 농수산물 가공업, 전통식품산업, 전통놀이산업, 수산레저산업을 비롯한 농어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05.12.31>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감면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92조 동법 시행령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①년도	②기분	③세목	④과세번호	⑤당초 결정세액	⑥감면 결정세액	⑦차인납부세액	⑧납기한
결정사유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